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1가단1449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윤화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김도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이지승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3.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8. 7.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32,606,77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606,7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5. 5. 26. B과 사이에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6.)을 체결하였고, 2012. 5. 22.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0.)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5. 24. 기업은행에 1,674,880원을, 2016. 10. 11. C은행에 15,144,999원을 변제하였다.
-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8338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B은 원고에게 16,887,339원 및 그 중 1,657,8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15,144,9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각 2017. 2. 24.까지 각 12%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11. 확정되었다(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및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7. 3.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B, E은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태 등

1)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7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B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등1)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C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7. 8. 7.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알지 못하였고, B의 채권자인 C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9383호 대여금 등)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C은행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항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분할협의를 B과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점,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3,000,000원인 사실, C은행은 B 및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이 사건 분할협의를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9383호 대여금 등), 위 사건에서 2020. 5. 4. ‘피고가 C은행에 2020. 6. 30.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6. 24. 위 결정에 따라 C은행에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또한 위 213,000,0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구체적 상속분은 60,857,142원(=213,000,000원×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가 C은행에 지급한 13,000,000원을 제외²⁾ 한 나머지 47,857,142원이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한다.
- 3)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2023. 1. 9. 기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32,606,771원(=16,887,339원 + 15,719,432원³⁾)이다. 결국 원고는 공동담보가액 47,857,142원과 피보전채권액 32,606,771원 중 적은 금액인 32,606,771원의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4)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가 구하는 32,606,7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606,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별지

- 1) C은행 1,500만 원, G카드 997,000원, H회사 2,807,000원, I회사 315,000원
-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식회사 C은행에 지급한 13,000,000원을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3) $150,981원(=1,657,890원 \times 277 \div 365 \times 0.12) + 682,147원(=15,144,999원 \times 137 \div 365 \times 0.12) + 14,886,304원(=16,887,339원 \times 2,145 \div 365 \times 0.15) = 15,719,432원$